

## 제천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1106
------------------	------

제출년월일 : 2006. 10. .  
제 출 자 : 제 천 시 장

### 1. 제안이유

- 「공직자윤리법」 개정에 따른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기능 및 위원 회의 등 의결기준 및 의결사항을 상위법에 맞게 개정 및 현행 조례의 운영 상 나타난 불합리한 규정을 개선 보완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기능 중 재산공개 대상 공직자의 범위(안 제3조)
-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위원 회의 등의 의결기준 및 의결사항(안 제6조)

### 3. 근거법령

- 「공직자윤리법」 제3조, 제8조제7항 및 제12항, 제9조, 제24조
-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조, 제19조

### 4. 의안전문 : 복임

### 5. 신·구조문 대비표 : 복임

- 복임 1. 근거법령(발췌분) 1부.  
2. 입법예고문 사본 1부.

## 제천시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천시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제천시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를 “제천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조중 “공직자윤리법”을 “「공직자윤리법」”으로, “제천시공직자윤리위원회”를 “제천시 공직자윤리위원회”로 한다.

제3조제1항제1호중 “법 제10조제1항에 규정하는 재산공개대상공직자”를 “법 제3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재산등록대상 공직자”로 하고, 동항 제2호중 “법 제8조제11항”을 “법 제8조제12항”으로 한다.

제6조제2항중 “출석위원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로 하고, 동항 단서 중 “재적위원”을 “출석위원”으로 하며, 동항 제1호중 “법 제8조제6항”을 “법 제8조제7항”으로, “법 제8조제11항”을 “법 제8조제12항”으로 하고, 동항 제4호중 “법 제23조”를 “법 제24조”로 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 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제천시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u>	<u>제천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u>
<p><b>제1조(목적)</b> 이 조례는 공직자윤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 및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u>제천시공직자윤리위원회</u>(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b>제3조(기능)</b> ①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사·결정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법 제10조제1항에 규정하는 재산공개대상공직자에 대한 등록사항심사와 그 결과의 처리</li> <li>2. 법 제8조제1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승인</li> <li>3. ~ 4. (생략)</li> <li>② (생략)</li> </ol> <p><b>제6조(위원회의 회의 등)</b></p> <p>① (생략)</p> <p>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과 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의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호의 사항은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법 제8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의뢰 및 법 제8조제1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의뢰의 승인</li> <li>2. ~ 3. (생략)</li> <li>4. 법 제23조 내지 법 제29조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고발</li> <li>③ ~ ④ (생략)</li> </ol>	<p><b>제1조(목적)</b> ————— 「<u>공직자윤리법</u>」—————</p> <p>————— <u>제천시 공직자윤리위원회</u>—————</p> <p>—————</p> <p><b>제3조(기능)</b> ① (현행과 같음)</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법 제3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재산등록대상 공직자—————</li> <li>2. 법 제8조제12항—————</li> <li>3. ~ 4. (현행과 같음)</li> <li>② (현행과 같음)</li> </ol> <p><b>제6조(위원회의 회의 등)</b></p> <p>① (현행과 같음)</p> <p>②—————, 출석위원과 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p> <p>————— 출석위원—————</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법 제8조제7항—————</li> <li>————— 법 제8조제12항—————</li> <li>—————</li> <li>2. ~ 3. (현행과 같음)</li> <li>4. 법 제24조—————</li> <li>—————</li> <li>③ ~ ④ (현행과 같음)</li> </ol>

## 관계법령

###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 2006.2.21 법률 제7849호]

**제3조 (등록의무자)**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직자(이하 "등록의무자"라 한다)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산을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1993.6.11, 1997.12.13, 1997.12.31, 1999.1.21, 1999.12.31, 2000.12.29, 2001.1.26, 2003.3.12, 2005.12.29, 2006.2.21>

1. 대통령·국무총리·국무위원·국회의원등 국가의 정무직공무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 지방자치단체의 정무직공무원과 지방의회의원
3. 4급 이상의 일반직 국가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을 포함한다) 및 지방공무원과 이에 상당하는 보수를 받는 별정직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을 포함한다)
4. 대통령령이 정하는 외무공무원과 4급 이상의 국가정보원의 직원 및 대통령경호실의 경호공무원
5. 법관 및 검사
- 5의2.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6. 대령이상의 장교 및 이에 상당하는 군무원
7. 교육공무원중 총장·부총장·대학원장·학장(대학교의 학장을 포함한다) 및 전문대학장과 대학에 준하는 각종 학교의 장, 특별시·광역시·도의 교육감·교육장 및 교육위원
8. 총경(자치총경을 포함한다) 이상의 경찰공무원과 소방정 및 지방소방정 이상의 소방공무원
- 8의2. 제3호 내지 제6호 및 제8호의 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는 직위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위에 채용된 계약직공무원
9. 정부투자기관의 장·부기관장 및 상임감사, 한국은행의 총재·부총재 및 감사, 금융감독원의 원장·부원장 및 감사, 농업협동조합중앙회·수산업 협동조합중앙회의 회장 및 상임감사
10.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기관·단체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단체(이하 "공직유관단체"라 한다)의 임원
  - 가. 정부투자기관, 한국은행 및 정부의 출연·보조를 받는 기관·단체 기타 정부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단체
  - 나.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사·지방공단 및 지방자치단체의 출연·보조를 받는 기관·단체 기타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단체

다. 임원의 선임에 있어서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 등을 요하거나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원을 선임하는 기관·단체

11. 기타 국회규칙·대법원규칙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정분야의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의 직원

②삭제 <1993.6.11>

**제8조 (등록사항의 심사)** ①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직자윤리위원회는 등록된 사항을 심사하여야 한다.

⑦공직자윤리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결과 허위등록 또는 직무상 지득한 비밀을 이용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상당한 혐의가 있다고 의심되는 등록의무자에 대하여는 그 증빙서류를 첨부하고 기간을 정하여 법무부장관(군인 또는 군무원의 경우에는 국방부장관)에게 조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6>

⑫제2항 내지 제9항의 규정은 제1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금융거래의 내용에 관한 자료의 제출요구를 하거나 제7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 의뢰를 하고자 할 때에는 관할공직자윤리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개정 1994.12.31>  
[전문개정 1993.6.11]

**제9조 (공직자윤리위원회)** ①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사·결정하기 위하여 국회·대법원·헌법재판소·중앙선거관리위원회·정부·지방자치단체 및 특별시·광역시·도교육청에 각각 공직자윤리위원회를 둔다.<개정 1991.11.30, 1993.6.11, 1994.12.31, 1997.12.13>

1. 재산등록사항의 심사와 그 결과의 처리
2. 제8조제12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승인
3. 제17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승인
4. 기타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하여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권한으로 정한 사항

②각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관할은 다음과 같다.<개정 1991.11.30, 1993.6.11, 1994.12.31, 1997.12.13>

1. 국회공직자윤리위원회는 국회의원 기타 국회소속공무원과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
2. 대법원공직자윤리위원회는 법관 기타 법원소속공무원과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
3. 헌법재판소공직자윤리위원회는 헌법재판소재판관 기타 헌법재판소 소속공무원과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
4. 중앙선거관리위원회공직자윤리위원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및 각급선거관리위원회소속공무원과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

5. 특별시·광역시·도공직자윤리위원회는 특별시·광역시·도소속공무원, 관할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 특별시·광역시·도의회의원 및 의회소속공무원과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
6. 시·군·구공직자윤리위원회는 시·군·구소속공무원, 관할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 시·군·구의회의원 및 의회소속공무원과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
7. 특별시·광역시·도교육청공직자윤리위원회는 특별시·광역시·도교육청 소속 공무원, 교육위원 및 교육위원회소속공무원과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
8.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제1호 내지 제7호외의 공직자와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
  - ③공직자윤리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9인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을 포함한 5인은 법관, 교육자, 학식과 덕망이 있는 자 또는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추천한 자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다만, 시·군·구공직자윤리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5인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을 포함한 3인은 법관, 교육자, 학식과 덕망이 있는 자 또는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자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개정 1993.6.11, 2001.1.26>
  - ④공직자윤리위원회의 위원의 임기·선임 및 심사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정한다. <신설 1993.6.11, 1997.12.13>
    1. 국회공직자윤리위원회는 국회규칙
    2. 대법원공직자윤리위원회는 대법원규칙
    3. 헌법재판소공직자윤리위원회는 헌법재판소규칙
    4. 중앙선거관리위원회공직자윤리위원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5.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대통령령
    6. 특별시·광역시·도공직자윤리위원회 및 시·군·구공직자윤리위원회와 특별시·광역시·도교육청공직자윤리위원회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 ⑤공직자윤리위원회는 이 법과 제4항 각호에 규정된 규칙·대통령령 또는 조례의 범위 안에서 그 운영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신설 1993.6.11>

**제21조 (위임규정)** 이 법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대통령령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개정 1991.11.30, 1993.6.11>

**제23조 삭제 <2001.7.24>**

**제24조 (재산등록거부의 죄)** ① 등록의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재산등록을 거부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0조의2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직선거후보자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등록대상재산에 관한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6월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1993.6.11]

**제24조의2 (주식백지신탁거부의 죄)** 공개대상자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14조의4제1항 또는 제14조의6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자신이 보유하는 주식을 매각 또는 백지신탁하지 아니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본조신설 2005.5.18]

**제25조 (허위자료제출 등의 죄)** 공직자윤리위원회(제8조제1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직자윤리위원회로부터 재산등록사항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등록기관의 장 등을 포함한다. 이하 제26조에서 같다) 또는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로부터 제8조제4항 및 제5항(제6조의2제4항·제11조제2항 및 제14조의4제6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14조의5제9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나 자료제출 등을 요구받은 각 기관·단체·업체의 장이 허위보고나 허위자료를 제출한 때나 정당한 사유 없이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거부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05.5.18]

**제26조 (출석거부의 죄)** 공직자윤리위원회로부터 제8조제6항(제6조의2제4항·제11조제2항 및 제14조의4제6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출석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때에는 6월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4.12.31, 2001.1.26, 2005.5.18>  
[본조신설 1993.6.11]

**제27조 (무허가 열람·복사의 죄)** 제10조제3항(제11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위반하여 허가없이 재산등록사항을 열람·복사하거나 이를 하게 한 때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4.12.31, 2001.1.26> [본조신설 1993.6.11]

**제28조 (비밀누설의 죄)** ① 제14조(제6조의2제4항·제11조제2항 및 제14조의4제6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위반하여 재산등록업무

에 종사하거나 하였던 자 또는 그밖의 자로서 직무상 재산등록사항을 알게 된 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공개된 재산등록사항외의 재산등록사항을 누설한 때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1.1.26, 2005.5.18>

②제14조의3(제6조의2제4항·제11조제2항 및 제14조의4제6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위반하여 금융거래의 내용에 관한 자료를 제공받은 자가 그 자료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그 목적외의 용도로 이를 이용한 때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1994.12.31, 2001.1.26, 2005.5.18>

③제2항의 징역형과 벌금형은 이를 병과할 수 있다. <신설 1994.12.31>  
[본조신설 1993.6.11]

**제28조의2 (주식백지신탁관여금지위반의 죄)** ①공개대상자등 또는 그 이해관계자가 제14조의7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신탁재산의 관리·운용·처분에 관한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신탁회사·자산운용회사·투자회사 또는 판매회사의 임·직원이 정보제공요구에 응한 때에는 각각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공개대상자등 또는 그 이해관계자가 제14조의7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신탁재산의 관리·운용·처분에 관여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본조신설 2005.5.18]

**제29조 (취업제한위반의 죄)**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퇴직공직자가 영리사기업체 또는 협회에 취업한 때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1.1.26>

[본조신설 1993.6.11]

##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일부개정 2006. 6.29 대통령령 제19573호]

**제3조 (등록의무자)** ①법 제3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외무공무원"이라 함은 「공무원보수규정」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직무등급이 6등급 이상인 직위의 외무공무원을 말한다. <신설 2001.6.30, 2005.2.11>

②법 제3조제6호에서 "이에 상당하는 군무원"이라 함은 2급이상의 군무원을 말한다.

③법 제3조제11호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을 등록하여야 할 특정분야의 공무원과 공직 유관단체의 직원은 다음과 같다. <개정 1994.12.23, 1994.12.31, 1999.12.7, 2000.4.18, 2001.4.27, 2001.11.29, 2005.2.11, 2005.7.26, 2006.6.29, 2006.8.17>

1.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별표 2의 제1호 가목 내지 다목과 제2호 가목·나목 및 제3호 가목의 연구직공무원, 별표 2의 제1호 가목·나목과 제2호 가목·나목 및 제3호 가목의 지도직공무원으로서 4급 이상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에 상당하는 연구관·지도관
2. 4급이상의 일반직공무원에 상당하는 직위에 보직된 장학관·교육연구관
3. 대학(대학에 준하는 각종학교를 포함한다)의 처장·실장
4. 감사원 소속공무원중 5급이하 7급이상의 일반직공무원 및 이에 상당하는 별정직 공무원
- 4의2. 국가청렴위원회 소속공무원중 5급 이하 7급 이상의 일반직공무원 및 이에 상당하는 별정직공무원
5. 국가경찰공무원 중 경정·경감·경위·경사 및 자치경찰공무원 중 자치경정·자치경감·자치경위·자치경사
6. 소방공무원중 소방령·소방경·소방위·소방장과 지방소방령·지방소방경·지방소방위·지방소방장
7. 국세청 및 관세청 소속공무원중 5급이하 7급이상의 일반직공무원 및 이에 상당하는 별정직공무원
8. 법무부 및 검찰청 소속공무원중 5급이하 7급이상의 검찰사무직공무원 및 마약수사직공무원
9. 중앙행정기관(소속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소속공무원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속공무원(읍·면·동 소속공무원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중 감사업무를 주된 기능으로 하는 부서(중앙행정기관의 경우에는 「정부조직법」 상 최소단위 보조기관과 그에 상응하는 직급으로 보하는 직위를 말하고,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는 조례 또는 규칙상 최소단위 보조기관과 그에 상응하는 직급으로 보하는 직위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근무하는 5급이하 7급 이상의 일반직공무원, 이에 상당하는 특정직공무원 및 별정직공무원과 그 상급감독자
- 9의2. 중앙행정기관 소속공무원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속공무원중 건축·토목·환경·식품위생 분야의 대민관련 인·허가, 승인, 검사·감독, 지도단속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 근무하는 5급 이하 7급 이상의 일반직공무원, 이에 상당하는 특정직공무원 및 별정직공무원과 그 상급감독자
10. 지방자치단체 소속공무원중 조세의 부과·징수·조사 및 심사에 관계되는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 근무하는 5급 이하 7급 이상의 일반직공무원, 이에 상당하는 별정직공무원 및 그 상급감독자

11. 제1호·제2호 및 제4호 내지 제10호의 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는 직급 및 직위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급 및 직위에 채용된 계약직공무원
12. 금융감독원의 2급 이상 직원  
④제3항제9호의2의 규정에 의한 해당 부서는 당해 등록기관의 장(법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기관의장을 제외한다)이 정한다. <신설 2001.4.27, 2001.6.30>

**제19조 (위원회의 회의등)**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다음의 사항은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1994.12.31, 2005.2.11>

1. 법 제8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의뢰 및 법 제8조제12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의뢰의 승인
  2. 법 제8조의2의 규정에 의한 조치
  3.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해임 또는 징계의결의 요구
  4. 법 제23조 내지 법 제29조에 해당되는 자에 대한 고발
- ③위원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는 위원회의 심사·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
1. 위원 본인과 관계있는 사항
  2. 위원 본인과 친족의 관계에 있거나 친족의 관계에 있었던 자와 관계 있는 사항
  3. 위원 본인이 참고인 또는 감정인으로 된 사항
-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의 심사·의결에 관여하지 못하는 위원은 제2항의 재적위원수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제외한다.

제천시 공고 제 2006 - 1325

제천시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 9. 7

### 제 천 시 장

#### 제천시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중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조례명 : 제천시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 개정이유**

「공직자윤리법」 개정에 따른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기능 및 위원 회의 등 의결기준 및 의결사항을 상위법에 맞게 일부 개정하고자 함.

#### **3. 주요내용**

-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기능 중 재산공개대상 공직자의 범위(안 제3조)
-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위원 회의 등의 의결기준 및 의결사항 (안 제6조)

#### **4. 의견서 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06년9월27 일까지 제천시장 (참조 기획감사실장)에게 의견을 제출하거나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연락처 640-5155 , FAX 640-5029

-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 전화번호, 주소
- 기타 참고 사항 등